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2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부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가. 제안이유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안 제8조).
-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촉진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사업).
- 입법예고(2020.3.5.~2020.3.25.)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 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민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공유촉진 공모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공모사업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지원분야 : 사업초기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 지원한도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정혜택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예산('20년) : 5억원(경상보조) □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 - 예산('20년) : 4억원(경상보조) - 대상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및 학교시설 개방 등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지원

- 현재, 서울시에서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단체) 등은 48개 단체이며, 최근 3년간 공유기업 지원 실적 및 지정현황(2018년 12개, 2019년 13개, 2020년 15개)은 다음과 같음.

〈민간 공유단체 등 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실적		비고
			선정 단체 수	지원액	
2015년	240	232(97%)	14	232	
2016년	300	280(93%)	24	280	
2017년	260	193(74%)	13	193	
2018년	260	260(100%)	12	260	
2019년	400	362(90%)	13	362	
2020년	500	-	15	500	예정

〈최근 3년간 공유기업 지정 현황〉

연내	연번	단체(기업)명	공유내용	단체 유형
2020년	1	어반정글	도시재생지역의 마을 공유지 개선 사업	중소기업 (법인)
	2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3	(주)누름	공유상점 온라인 홍보 및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법인)
	4	(주)위홈	위홈특례공유숙박업 등록 및 호스트 지원	중소기업 (법인)
	5	(사)사람과마을	성미산 마을 내 공유센터, 리엔업 사이클링샵 운영	비영리 법인
	6	(주)2교시	문화예술공유활동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 파티	중소기업 (법인)
	7	섬핑네트웍스	공공체육시설 통합 '우리동네스포츠'서비스 개발사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8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지역공유공간 운영 및 자원 공유	(사회적) 협동조합
	9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컵 공유 서비스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10	(주)페이스페이스	공유생산기지 프로그램 활동	중소기업 (법인)
	11	아하! 열린교육센터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공유	비영리민간 단체
	12	지와이엔씨(주)	온·오프라인 친환경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 (법인)
	13	되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기반 자원순환 교육 및 장터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14	(주)촌티서울	건강한 거리 공유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15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익데이터 발굴 및 활용 프로젝트	(사회적) 협동조합
	16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공유주방 운영	중소기업 (법인)
	17	레이블소셜	전통음악 보존을 위한 음원, 영상, 콘텐츠 제작	예비사회적 기업
	18	(주)터치포굿	업사이클 소재 중개소와 새사용 이벤트	사회적기업
	19	세어라운드(주)	소규모 대여샵의 유휴 물품 대여서비스	중소기업 (법인)
	20	쉐어잇(주)	바이러스 확산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중소기업 (법인)
	21	은평e품앗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유 문화 확산	비영리 민간단체
2019년	1	한컴모빌리티	IoT 기반 주차장 공유	중소기업 (법인)
	2	도시공유플랫폼	aiQR마트:음식주문 무인POS&AI기반 무인스토어	중소기업 (법인)
	3	마이샵온샵	비영업 시간대 점포 및 점포내 유휴공간 공유	중소기업 (법인)
	4	마지막삼십분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서비스	중소기업 (법인)

5	미디어잇	유휴공간내 작품 전시 매칭 플랫폼	중소기업 (법인)
6	반달컴퍼니	반려동물 육아 품앗이	예비사회적 기업
7	SEI	보조배터리 공유	중소기업 (개인)
8	ASN	인적자원 공유 플랫폼	중소기업 (법인)
9	위라이드	공유자전거 활용 도시재생 문화프로젝트	중소기업 (법인)
10	더화사한연구실	여성 브랜드 패션 의류 공유	중소기업 (법인)
11	체리피카	의류, 가방 등 패션잡화 공유	중소기업 (법인)
12	래디우스랩	회원가입을 통한 시간제 차량 공유	중소기업 (법인)
13	백가드	유휴공간을 활용한 가방 보관 서비스	중소기업 (법인)
14	인디씨에프	SNS 바이럴 마케팅 영상 콘텐츠 제작 툴 공유	중소기업 (법인)
15	주만사	ARS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중소기업 (법인)
16	한국춤예술센터	스튜디오 유휴기간 공유를 통한 공연 제작	비영리법인
17	토파비즈	잉여원단 공유를 위한 배출·수집 운반 체계 구축 및 소재은행 DB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18	마을발전소	공유 워크북 및 표식 제작과 실천 활동 중심의 공유 문화 조성	비영리법인
19	백지장	유휴공간을 저가 임대, 공유공간으로 개발	예비사회적 기업
20	위대한상사	요식업 자영업자의 유휴 시공간 공유	중소기업 (법인)
21	S&G United	일반 가정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홈스테이 공유	중소기업 (법인)
22	열린옷장	정장 기부를 통한 정장·사회생활 경험 공유	비영리법인
23	선렵건축사사무소	청년 주거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공유	중소기업 (법인)
24	자락당	온·오프라인 기반 물건 공유	사회적기업
25	히든북	유휴공간을 활용한 야외도서관	중소기업 (법인)
26	매스아시아	1인 모빌리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	중소기업 (법인)
27	모두컴퍼니	어플(모두의 주차장) 기반의 주차장 공유	중소기업 (법인)
28	씨엘인포넷	중고 유아(동) 용품 및 가정생활용품 공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29	어픽스	유아용품, 생활용품, 소형가전(디지털기기) 공유	중소기업 (법인)
30	조인어스코리아	다국어 지식 플랫폼을 통한 언어(재능) 공유	비영리민간단 체
31	허밍비	시니어의 재능공유를 통해 상품 판매 및	중소기업

2018년			소셜다이닝 추진	(법인)
	1	(주)매스아시아	앱으로 간단히 QR코드 입력하여 공유하는 민간 유료 자전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2	(주)블랙시트	집단지성 활용 개인 버킷리스트 공동실현 플랫폼	사회적기업
	3	사회적기업 (유)안테나	문화예술 창작자에게 보족한 전시,판매,교육공간 제공	사회적 기업
	4	(주)위즈돔	모바일앱으로 시간,장소가 일치하는 회원간 카셰어링	중소기업 (법인)
	5	(주)캠퍼스스테이	도심내 대학 유휴 부대시설 활용 온라인 매칭 플랫폼	중소기업 (법인)
	6	재단법인 흥합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간 공유	비영리법인
	7	버스킹티비 주식회사	거리공연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공유	중소기업 (법인)
	8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들과 문자공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	(사회적) 협동조합
9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시각장애인과 도서 공유	중소기업(법인)	

○ 최근 지정된 공유단체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법인)이 가장 많고(30) 다음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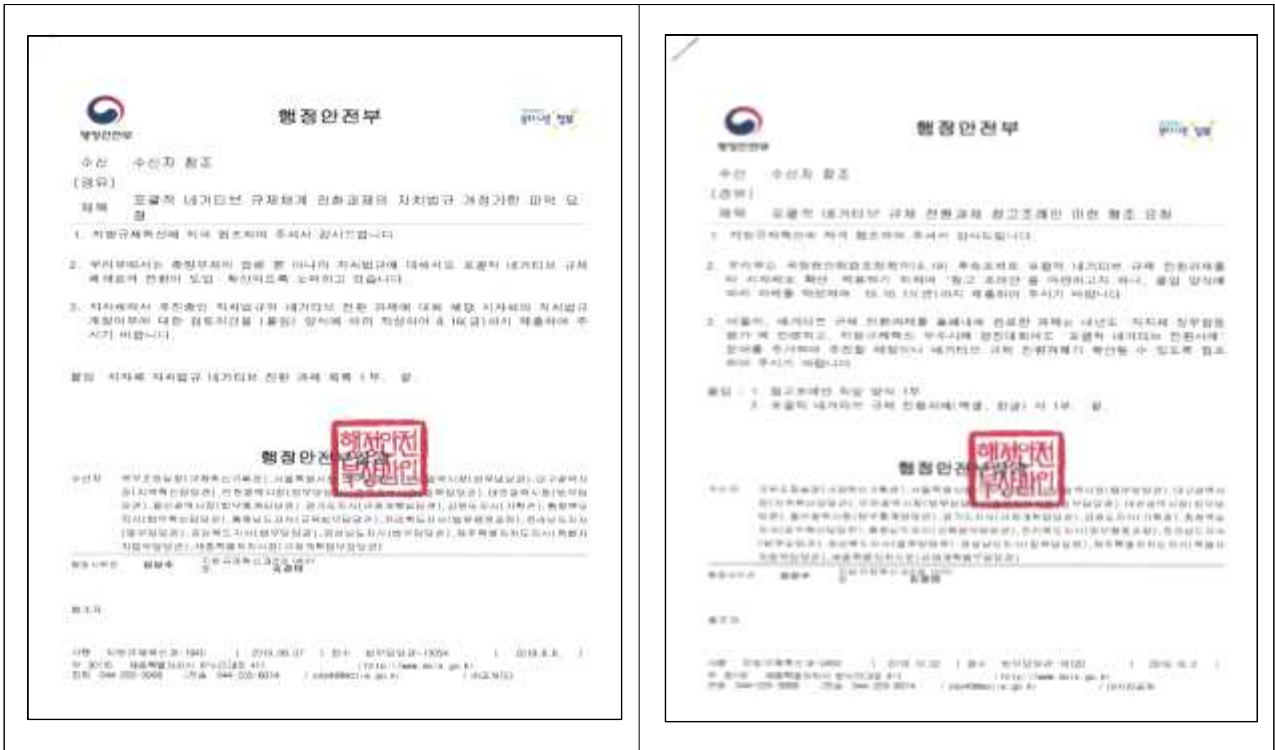
〈2020년(5월 기준) 공유기업 유형별 지정 현황〉

합계 (2018-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공유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유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법인)	중소기업 (개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기업-예비사회적기업
48	5	6	30	4	3

○ 동 조례 제출 배경은 2019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후속조치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¹⁾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1) 기존에 허용(Positive)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Negative)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말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 자치법규 개정기한 파악 요청 등 공문〉



- ※ 행정안전부는 네거티브 규제전환 전환규제를 완료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도 동 분야를 추가할 예정임.
- 개정조례안과 같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변경시 추가되는 지원대상 범위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2)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들로,

- 2)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3)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0.>
 - ②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③ 삭제 <2008. 4. 1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자의 범위></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p> <p>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p>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p>	<p>좌동</p>
	<p>-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p> <p>-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④ 삭제 <2009. 11. 20.>

⑤ 삭제 <2009. 11. 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4. 10., 2016. 9. 29.>

-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고, 동 개정안에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동 조합 중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임.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연구조합명	법인 설립일
한국바이오연구조합	1982-04-20
한국반도체연구조합	1986-06-09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1986-08-19
그린바이오연구조합	1987-09-30
한국공기청정연구조합	1988-02-11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1988-06-02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1990-01-12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1990-07-05
고등기술연구원조합	1992-07-07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	1994-06-13
철강융합신기술조합	1995-04-18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1996-03-15
한국전지연구조합	1997-05-16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1999-10-21
한국로봇연구조합	1999-11-03
공조, 냉동, 설비연구조합	2000-02-03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2000-06-10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2002-02-01
멤스기술연구조합	2002-03-07
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	2004-01-30
한국고주파산업연구조합	2005-04-29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2005-12-26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2006-02-22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2006-08-25
한국공간정보연구조합	2007-01-03
한국디지털씨씨티브이연구조합	2008-06-30

한국클라우드 컴퓨팅연구조합	2009-01-21
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조합	2012-04-17
기계융복합연구조합	2012-10-30
철도신호사업연구조합	2013-07-03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2013-11-11
쓰리디프린팅연구조합	2014-03-12
한국원자력산업기술연구조합	2014-03-12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2014-05-22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2014-08-19
혁신창조경제아이오티기술연구조합	2014-10-23
원전해체산업기술연구조합	2014-12-18
근거리보통전기자동차중소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2015-01-12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	2015-02-10
한국한방의료기산업연구조합	2015-03-10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2015-11-10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2015-11-20
한국핵융합가속기연구조합	2015-12-30

- 17개 시·도 중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1)를 살펴보면,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임.

〈다른 시도 공유단체 지정 범위 현황〉

순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연도)	공유단체 지정 범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19.12.31.)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안).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조례 (17.01.01.)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5.01.01.)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u>「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u> 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4	경기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8.08.01.)	제6조(경기도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u>「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u>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19.06.28.)	제6조(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u>「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u>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

			<p>쳐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다.</p>
6	경상남도	<p>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19.05.02.)</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7	대구광역시	<p>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17.12.27.)</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7.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8	인천광역시	<p>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7.12.29.)</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9	전라남도	<p>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p>	<p>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17.12.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1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05.19.)	<p>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09.20.)	<p>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 다만, 서울시에서 공유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포괄적 네거티브⁴⁾ 전환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기존에 허용(Positive)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Negative)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말함.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공유사업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한 잠재적 수요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분석을 통해 개정하려는 것인지 여부와 - 조례 개정을 통한 성과의 예측과 분석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중앙정부의 평가 등 실적만을 고려한 개정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유사업 지원 대상 확대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오히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혜택이 줄어들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코로나 19 이후, 공유사업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등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측면도 있는바, 향후 새로운 사업 방안 구상 등 공유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2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안 제8조).

나.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사회혁신 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촉진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3. 5.~3. 25.)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사회혁신담당관”을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p> <p>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 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③ (생략)</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사회혁신담당관</u>이 된다.</p>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u>----- -----.</p>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전환도시담당관 장준호(☎ 2133-7993)